[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4조 관련) <개정 2026. 10. 23.>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시스템(open.nec.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 구 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청구 내용	
공개 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수 수 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 수 증

접수 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선거관리위원회

유 의 사 항

1.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소속기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소속기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속기관으로 고쳐 사용한다.

210㎜×297㎜ [일반용지 80g/㎡]